

##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·관리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### 1. 자동계측기 설치기준

가. 자동계측기는 수위, 수량, 전기전도도,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(pH)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·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,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.

구분	수위	수량	전기전도도	온도	pH
허용오차 범위	±0.5% F.S	±2% R.D	±2% F.S	±0.25℃	±0.2

나.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깊이는 감시정의 굴착깊이와 자연수위, 수위 센서의 측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, 취수정의 최대 수위강하량(안정수위) 보다 아래에 설치하여 센서가 항상 지하수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.

### 2. 자동계측기 운영·관리기준

가. 수위, 수량, 전기전도도,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(pH) 등을 1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측정·기록·저장하여야 한다.

- 1) 수위는 지반고(GL)를 기준으로 지하수면까지 측정하고, 수량은 적산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.
- 2) 각 항목별 측정단위는 아래를 적용한다.

구분	수위	수량	전기전도도	온도	pH
단위	m	m <sup>3</sup> /h	μS/cm	℃	-

나. 수위, 수량, 수질 자동계측기는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.

다. 자동계측기의 측정항목별 센서, 연결케이블 등 자동계측기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결과에 따라 보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